

심 사 보 고 서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435 |
|----------|------|

2021년 7월 2일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I 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1. 5. 25.
2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회부일자 : 2021. 5. 31.
4. 상정일자 :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6. 23.)
 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(2021. 6. 28.)
 - 원안가결

Ⅱ. 제안설명의 요지 (교육행정국장 이병호)

1. 제안이유

-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‘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’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·조성하기 위함
-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시기 초반으로 향후 5년간 보통교부금이 매년 교부예정이나, 공공건축심의, 재정투자심사,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많이 소요되어, 당해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,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9조 규정에 따라 「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설치년도 : 2021년
- 기금 조성 총규모: 385억원

(단위: 천원)

| 기 금 명 | '20년도 말 조성액(a) | '21년도 기금운용계획 | | '21년 말 조성액 (d = a + b - c)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| | 수 입 (b) | 지 출 (c) | | |
|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| - | 38,459,744 | - | 38,459,744 | |

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435호, **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운용 계획안**은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

2.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

-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'21년 5월,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2조가 정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신설·운용하고자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임
-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-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행정안전부의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①기금운용총칙과 ②자금운용계획으로 구분하고,
 - ①기금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, 기금의 조성·운용 등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기재하였으며, ②자금운용계획에는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출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

(1) 기금 조성 개요

-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'21년도에 384억 5,900만원을 조성하여 사용계획없이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계획한 것으로 교육부의 「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근거하여 금년도말 조성액을 384억 5,900만원으로 계획하여 제출됨

〈표 3-1〉 기금 조성규모

(단위 : 백만원, %)

| '20년도 말 조성액 ① | '21년도 조성계획 | | '21년도 말 조성액 ④=①+②-③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② | ③ | |
| - | 38,459 | - | 38,459 |

(2) 기금 수입계획

- 수입계획의 경우,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(384억 1,100만원)과 예금이자 수입(4,800만원)을 계획한 것으로
 - 제출일 현재 '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교육시설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기금전출금이 미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,
 - 수입계획에 실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5일 시의회에 제출된 「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」 심사시 해당 기금전출을 위한 세출과목에 대한 과목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

〈표 3-2〉 수입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| 수입과목 | | | | '21년 수입액 (A) | '20년 수입액 (B) | 증 감 (A-B)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장 | 관 | 항 | 목 | | | |
| 합 계 | | | | 38,459 | - | 38,459 |
| 자체수입 | | | | 48 | - | 48 |
| | 이자수입 | | | 48 | - | 48 |
| | | 이자수입 | | 48 | - | 48 |
| | | | 예금이자수입 | 48 | - | 48 |
| 내부거래 | | | | 38,411 | - | 38,411 |
| | 전입금 | | | 38,411 | - | 38,411 |
| | | 전입금 | | 38,411 | - | 38,411 |
| | | |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| 38,411 | - | 38,411 |

(3) 기금 지출계획

○ **지출계획**의 경우, 예치금 항목으로 384억 5,900만원 전액을 계상한 바,

- 예치금은 기금의 고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, 향후 유동적인 지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과목으로
- 교육현장에서 교육시설을 개선하기에 앞서 공공건축심의, 재정투자심사, 공유재산심의를 비롯한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의 제 요인을 고려하여 사업비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계획한 것으로 검토됨

〈표 3-3〉 지출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| 지출계획 | | | | | | '21년 지출액 (A) | '20년 지출액 (B) | 증 감 (A-B) |
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분야 | 부문 | 정책 | 단위 | 세부 | 사업내역 | | | |
| 합 계 | | | | | | 38,459 | - | 38,459 |
| 교육 | | | | | | 38,459 | - | 38,459 |
| | 교육일반 | | | | | | | |
| | | 예비비및기타 | | | | 38,459 | - | 38,459 |
| | | 예비비및기타 | | | | 38,459 | - | 38,459 |
| | | | 내부유보금 | | | 38,459 | - | 38,459 |
| | | | | 예치금 | | 38,459 | - | 38,459 |

○ 다만, 「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르면 지출계획중 '분야·부문'은 「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이 정하는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에 따라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,

- 동 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예비비 및 기타**는 분야·부문이 “교육”, “교육일반”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 기준에 따라 “예비비”로 적정 편성이 필요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〈표 3-4〉 예산구조 수정 필요내역

| 지출계획 (제출안) | | | | | | 지출계획 (수정의견) | | | | | |
|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|----|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|----|----|------|
| 분야 | 부문 | 정책 | 단위 | 세부 | 사업내역 | 분야 | 부문 | 정책 | 단위 | 세부 | 사업내역 |
| [050]교육 | | | | | | [160]예비비 | | | | | |
| [054]교육일반 | | | | | | [161]예비비 | | | | | |
| | | [01]예비비및기타 | | | | | | [01]예비비및기타 | | | |
| | | [01]예비비및기타 | | | | | | [01]예비비및기타 | | | |
| | | [03]내부유보금 | | | | | | [03]내부유보금 | | | |
| | | 예치금 | | | | | | 예치금 | | | |

○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기금사업의 잠재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유재원을 **예치금**으로 지출계획한 것이나, 결과적으로 세부사업인 ‘내부유보금’으로 384억 5,9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인 바,

- 적절한 세부사업이 없어 ‘예비비 및 기타’ 단위사업중 내부유보금으로 부득이하게 지출계획한 것으로 사료되나
- 행정안전부가 기금은 예기치 못한 수요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비 부족분 충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비비 편성을 금지하고 있어
- 사실상의 예치금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한 것은 적정과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예치금이 적정 예산과목으로 편성되도록 교육부에 사업별 예산구조에 대한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

(4) 기타 검토

- 관련 법률은 자치단체가 매년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, 관련 법률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'중기지방재정계획'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
 -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, 중기재정계획 총괄부서가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하고,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친 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, 제출일 현재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
 -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가 '20년 5월, 이미 유사 사례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동일한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
- 아울러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조례의 입법취지에 따라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된 것이나
 - 지출계획(384억 5,900만원) 전액을 잉여재원으로 판단하여 384억 5,900만원 전액을 예치하려는 것으로 고유사업에 대한 구체적 지출이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

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2.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

1) 소위원회 구성

- 일 자 : 2021. 6. 24.(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)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(의회별관 2층)
- 위원구성 :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(13명)
 - 위 원 장 : 송재혁(환경수자원)
 - 부위원장 : 김경영(보건복지), 이병도(기획경제)
 - 위 원 : 최정순(행정자치), 최 선(기획경제)
오현정(환경수자원), 이광성(환경수자원)
김태호(문화체육관광), 이정인(보건복지)
정재웅(도시안전건설), 문병훈(도시계획관리)
이승미(교통), 전병주(교육)

2) 소위원회 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

○ 제1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1. 6. 25.(금) 14:00~21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위원회 의원
- 내 용 :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의 소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원칙(심사기준 등) 마련

○ 제2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1. 6. 26.(토) 10:30~19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의 소소위원회 운영

○ 제3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1. 6. 27.(일) 10:30~22:3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의 소소위원회 운영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2021. 6. 28.)

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435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연월일 : 2021년 5월 25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- 가.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‘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’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·조성하기 위함
- 나.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향후 5년간 보통교부금이 매년 교부될 예정이나, 공공건축심의, 재정투자심사,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, 당해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,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함
- 다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9조 규정에 따라 「202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」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 설치개요

- 설치년도 : 2021년
- 기금 조성 총규모: 385억원

(단위: 천원)

| 기금명 | '20년도 말 조성액(a) | '21년도 기금운용계획 | | '21년 말 조성액 (d=a+b-c)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| | 수입(b) | 지출(c) | | |
|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| - | 38,459,744 | 0 | 38,459,744 | |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-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
- 「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- 「지방재정법」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: 교육시설안전과 시설기획팀 이원경 (☎ 399-9648)

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「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(안)」

[교육시설안전과, 2021. 5.]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2021년도
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·운영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

I. 운용총칙

1 기금 설치개요

①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, 제9조(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)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② 목적

-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필요 재원 연차적 적립·조성

③ 설치년도: 2021년

① 기금 사업목표

- 서울특별시교육청 **교육시설의 환경개선**에 필요한 **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**하기 위함

② 2021년 기금 사업개요

가. 기금조성 사유

-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**환경개선** 재원 확보
- **그린스마트미래학교** 사업 추진에 필요한 **안정적인 재원** 확보

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개축, 리모델링의 대규모 시설사업으로 설계 이전 **각종 행정절차*로 인하여 당해연도 예산 집행 불가**

* 사전기획용역, 검토위원회, 공공건축심의, 재정투자심사, 공유재산심의 등

나. 기금조성 재원

- 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
- ②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- ③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
- ④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- ⑤ 그 밖의 수입금

다. 기금조성 용도

- ①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
- ② 대규모 재난·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
- ③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

라. 사업 계획

※ 21년 계획은 그린스마트사업에 한해 작성

- 스마트 인프라 확충, 친환경 제로에너지 추진 등 **미래학교 가치 구현**
- **학교단위 개축** 또는 **리모델링**의 대규모 시설사업 집행

그린스마트미래학교

'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**학교 공간과 교육의 혁신을 이뤄내야**하고 '정부 차원에서 일선 교육청 대상의 **역량 지원 강화, 적극 행정 장려, 애로사항 해소**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 필요'(2021. 교육부 업무계획 관련 대통령 당부사항)

- 사업기간: 2021년 ~ 2025년
- 사업대상: 40년 이상 경과 학교건물 496동(1,368천㎡)
- 총사업비: 3.2조원(국비 0.97조원(30%), 지방비 2.2조원(70%))
- 사업방식: 재정사업 2.3조원(75%), BTL 0.95조원(25%)
- 사업유형: 개축(공립), 리모델링(공사립)
- 5개년(2021~2025) 사업물량 및 사업비

(단위: 동, 억원)

| 구분 | 2021~2025 | | 2021 | | 2022 | | 2023 | | 2024 | | 2025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| 동수 | 사업비 | 동수 | 사업비 | 동수 | 사업비 | 동수 | 사업비 | 동수 | 사업비 | 동수 | 사업비 | |
| 전국 (100%) | 2,835 | 185,037 | 761 | 49,670 | 518 | 33,809 | 518 | 33,809 | 518 | 33,809 | 520 | 33,940 | |
| 서울 (17.5%) | 496 | 32,341 | 134 | 8,133 | 90 | 6,010 | 90 | 6,010 | 90 | 6,010 | 92 | 6,178 | |
| 사업 방식 | 재정 | 374 | 22,814 | 102 | 6,222 | 68 | 4,148 | 68 | 4,148 | 68 | 4,148 | 68 | 4,148 |
| | BTL | 122 | 9,527 | 32 | 1,911 | 22 | 1,862 | 22 | 1,862 | 22 | 1,862 | 24 | 2,030 |



③ 기금 조성·운영 주요 내용

가. 2021년도 기금 조성 계획

- 그린스마트 사업시기 초반으로 기금조성 규모 측정 곤란 및 사업시기 불확실
- 교육부 보통교부금은 그린스마트 사업시기와 달리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교부되어 집행하지 못할 경우 불용 우려
- 교육부 보통교부금 자금 관리 필요

⇒ 2021년 교부금 범위 내에서 기금 조성 필요

⇒ 향후, 사업이 확정된 이후 교육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**연차적으로 기금조성 계획을 수정 반영**할 계획

나. 기금 조성 총규모

(단위: 천원)

| 기금명 | '20년도 말 조성액(a) | '21년도 기금운용계획 | | '21년 말 조성액 (d=a+b-c)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| | 수입(b) | 지출(c) | | |
|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| - | 38,459,744 | - | 38,459,744 | |

다. 기금 조성 자원별 현황

(단위: 천원)

| 기금 자원별 | '20년도 말 조성액(a) | '21년도 기금운용계획 | | '21년도 말 조성액 (d=a+b-c) | 비고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| | 수입계획(b) | 지출계획(c) | | |
| 합 계 | - | 38,459,744 | - | 38,459,744 | |
|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| - | 38,411,000 | - | 38,411,000 | |
| 기금운용수익(이자수입) | - | 48,744 | - | 48,744 | |

라. 기금 용도

- 근거: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설치·운영 조례」 제4조
- 대상: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시설비

마. 기금 관리

- 근거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5조(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)
- 관리: 예치금으로 운용

4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: 해당없음

II. 자금 운용계획

1 기금 수지 총괄

(단위: 천원)

| 수 입 계 획 | | | | 지 출 계 획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수입항목 | '21년 수입액 | '20년 수입액 | 증 감 | 지출항목 | '21년 지출액 | '20년 지출액 | 증 감 |
| 합 계 | 38,459,744 | - | 38,459,744 | 합 계 | 38,459,744 | - | 38,459,744 |
| 교특회계 전입금 | 38,411,000 | - | 38,411,000 | 비용자성 사업비 | - | - | - |
| 기부금 | - | - | - | 용자성 사업비 | - | - | - |
| 용자 금수 | - | - | - | 인력 운영비 | - | - | - |
| 예치 금수 | - | - | - | 기본경비 | - | - | - |
| 이자수입 | 48,744 | - | 48,744 | 예치금 | 38,459,744 | - | 38,459,744 |
| 기타 | - | - | - | 기타 | - | - | - |

2

기금 수입 계획

(단위: 천원)

| 장 | 관 | 항 | 목 | '21년 수입액 | '20년 수입액 | 증감 | 산출내역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자체수입(20000) | | | | 48,744 | - | 48,744 | |
| 이자수입(24000) | | | | 48,744 | - | 48,744 | |
| 이자수입(24000) | | | | 48,744 | - | 48,744 | |
| 예금이자수입(24101) | | | | 48,744 | - | 48,744 | |
| 내부거래(50000) | | | | 38,411,000 | - | 38,411,000 | |
| 전입금(51000) | | | | 38,411,000 | - | 38,411,000 | |
| 전입금(51100) | | | | 38,411,000 | - | 38,411,000 | |
|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(51102) | | | | 38,411,000 | - | 38,411,000 | |
| 수입 합계 | | | | 38,459,744 | - | 38,459,744 | |

3

기금 지출 계획

(단위: 천원)

| 분야 | 부문 | 정책 | 단위 | 세부 | 세부항목 | '21년 지출액 | '20년 지출액 | 증감 |
|---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교육 | | | | | | 38,459,744 | - | 38,459,744 |
| 교육일반 | | | | | | 38,459,744 | - | 38,459,744 |
| 예비비 및 기타 | | | | | | 38,459,744 | - | 38,459,744 |
| 예비비 및 기타 | | | | | | 38,459,744 | - | 38,459,744 |
| 내부유보금 | | | | | | 38,459,744 | - | 38,459,744 |
| 예치금(710-04) | | | | | | 38,459,744 | - | 38,459,744 |
| 지출 합계 | | | | | | 38,459,744 | - | 38,459,744 |

Ⅲ.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

(단위: 천원)

| 연도별 | 조성액 | | | 집행액 | | | 잔액 (㉑-㉒)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
| | 계(㉑) | 전입금 | 이자 수입 | 계(㉒) | 비용자성 사 업 비 | 기타지출 | |
| 2021 | 38,459,744 | 38,411,000 | 48,744 | - | - | - | 38,459,744 |

Ⅳ.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

(단위: 천원)

| 구 분 | 예치(탁)처 | 예치금 및 예탁금 | | | 비고 |
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
| | | '20년도 말 현재액㉑ | '21년도 말 현재액㉒ | 증감(㉒-㉑) | |
| 합 계 | NH농협은행 | - | 38,459,744 | 38,459,744 | |
| 예치금 | NH농협은행 | - | 38,459,744 | 38,459,744 | |
| 예탁금 | - | - | - | - | |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설치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
2.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3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
4.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5. 그 밖의 수입금

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금액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.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
2. 대규모 재난·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
3.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

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교육감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: 교육행정국장
2. 기금출납원: 시설기획담당 사무관

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심의위원회 설치)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4.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7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당연직 위원: 기획조정실장, 예산담당관, 교육시설안전과장
2. 위촉직 위원: 기금 운용, 기금 관련 분야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, 지역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
-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,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용역, 자문,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2.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-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④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1조(위원의 해촉)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- 1.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- 3. 직무 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5. 제1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제12조(간사)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- ② 간사는 시설기획담당 사무관이 된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